

환경친화적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(제7조 관련)

엔진 출력 범위	탄화수소 (HC)	질소산화물 (NOx)	입자상물질 (PM ₁₀)	측정방법
8kW 미만	7.5g/kWh 이하 (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)		0.4g/kWh 이하	NRSC모드(Non-Road Steady Cycle: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고정 측정 모드) 및 NRTC모드(Non-Road Transient Cycle: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단기 변화 측정 모드)
8kW 이상 19kW 미만	7.5g/kWh 이하 (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)		0.4g/kWh 이하	
19kW 이상 37kW 미만	4.7g/kWh 이하 (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)		0.015g/kWh 이하	
37kW 이상 56kW 미만	4.7g/kWh 이하 (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)		0.015g/kWh 이하	
56kW 이상 130kW 미만	0.19g/kWh 이하	0.4g/kWh 이하	0.015g/kWh 이하	
130kW 이상 560kW 미만	0.19g/kWh 이하	0.4g/kWh 이하	0.015g/kWh 이하	
560kW 이상	0.19g/kWh 이하	3.5g/kWh 이하	0.04g/kWh 이하	

비고

1.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원동기에 적용한다.
2. 탄화수소는 비메탄탄화수소로 측정한다.
3.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0조제 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.